

『상방정례』로 보는 조선왕실의 복식구조

- 착용사례를 중심으로 -

김 소 현

배화여자대학 전통의상과 교수

A Study on the Wearing Occasions of the Royal Attire in Joseon Dynasty through the Regular rule of Sang-uiwon

Soh-Hyeon Kim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en's College

(2008. 2. 28 토고)

ABSTRACT

The Regular rule of Sang-uiwon served as a manual of Royal Attir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ike as making letters about the affairs, consulting, and permission, Royal ceremonial attire was made and presented to the royal family. The materials for the Royal informal dress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usual tribut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formal dress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noble class. But the name of items was different such as Goa du[man's jacket], Go ui[woman's jacket], etc. The royal family continued to wear old days dress as akjurm and noui, which were not worn by common people any more, as a means of differentiating clothes.

Bub-bok, which was designed only for key figures of the royal family such as the king, crown prince, queen, and crown princess, was the best status symbol. Because of its highly limited example of wearing, bub-bok was the authority of the wearer itself, with only difference in color, pattern, and material depending on social status.

Yong-po is the most frequently worn by the Royal men. Yong-po worn with jong-lip served as yung-bok or gun-bok, and iksun-gwan functioned as sang-bok. Royal Attire for men was clearly divided into Yong-po as sang-bok, bub-bok as myun-bok and gangsapo, while jeok-ui for women functioned as both sang-bok and bub-bok. However, the use of jeok-ui was defined by differentiate sang-bok from bub-bok like as the pattern of Hyung-bae, number of embroidered round badges, shoes and ornaments.

Key words: regular rule of Sang-uiwon(상방정례), royal attire(왕실복식), royal informal dress(의대), Yung-bok(융복), Sang-bok(상복), Bub-bok(법복)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G00090)

Soh-Hyeon Kim, e-mail: shekim@baewha.ac.kr

I. 서론

조선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복과 장식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부서인 상의원에서 1752년(영조 28)에 왕의 명령을 받아 상의원 소관 제반 업무에 드는 비용에 관한 규례(規例)를 기록한 책이 『상방 정례』이다. 항례(恒例)를 기록한 천(天)과 별례(別例)를 기록한 지(地)·인(人)하여 도합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례 천권에는 미리 정해져 있거나 예측되는 생활 즉 생일, 명절, 절기 등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 불품을 기록하였다. 각전과 각궁의 생일을 맞아 올리는 탄일·생신진상, 설[정조(正朝)], 삼진날[중삼(重三)],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등 명절에 올리는 절일진상, 춘추로 2차례 올리는 춘추 양등(兩等) 진상, 초하루마다 올리는 매삭(每朔) 진상, 보름마다 올리는 간삭(間朔) 진상, 1년에 1차례 올리는 연례진상·연례진배,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줄 이엄(耳掩)류의 송사물(頌賜物)을 1년에 1번 올리는 연례송사 등이다. 항례에 따라 상의원에서 진상한 물품목록을 기록한 것으로 왕실의 일상적인 의생활을 살필 수 있다.

별례(別例)인 지권(地卷)과 인권(人卷)에는 각종 왕실 행사에 따른 사례 별 복식이 다루어져 왕실의례와 복식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지권(地卷)은 명령에 따라 수시로 준비해야하는 복식을 싣고 있으며 인권(人卷)에서는 각종 왕실 행사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복식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 중 생활상과 더불어 왕실 복식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 사항을 살필 수가 있다.

왕실복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물이 있지만 대개 면복, 적의 등 의복 자체에 주목하거나 왕실흔례인 가례 복식과 진연·진찬 등의 잔치에 착용하는 복식 등 특정 의례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왕실의 주요 의례에 따르는 복식과 특정 의복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졌으나 왕실의 의생활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상방정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연구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뽑아내어

단편적으로 다루어왔다. 이 연구는 『상방정례』를 기본 자료로 삼아 착용사례를 중심으로 왕실의 복식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각종 왕실 행사와 절차에 따라 착용하는 복식을 살펴봄으로써 궁중복식의 착용 사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방대한 왕실행사를 제한된 지면에 다루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세밀한 고찰은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II. 왕실 평상복¹⁾

상의원에서는 평상복 제작에 소요되는 옷감과 재료를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進上)의 예로 각궁과 각전에 올려서 만들도록 하였다. 항시 이루어지는 진상에는 절일(節日)진상, 봄·가을에 올리는 춘추양등(春秋兩等)진상, 매달 초하루에 올리는 매삭(每朔)진상, 매달 보름에 올리는 간삭(間朔)진상, 1년에 1차례 올리는 연례진배(年例進排)와 연례진상(年例進上)의 예가 있다. 절일진상에는 일년이 시작되는 설[음력 1월1일], 각 계절이 시작되는 날 즉, 봄철의 삼짓날[음력 3월3일], 여름철의 단오[음력 5월5일], 가을철의 추석[음력 8월15일], 겨울철의 동지[양력 12월22일]가 있으며 각전과 각궁의 생일을 맞아 올리는 탄일·생신진상 등이 있다. 절일진상은 명절을 준비한다는 개념보다는 계절에 맞추어 제철의 복을 준비한다는 개념이 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평상복이라 함은 걸옷을 갖추기 위한 받침 옷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1. 남자복식

왕실 남성이 착용하는 평상복은 반가의 남성이 착용하는 평상복과 다를 바 없이 바지[把持], 적삼[삼아(衫兒)], 저고리[과두(麥肚)], 철럭[帖裏], 더그레[加文刺]로 구성된다. 상투를 튼 머리는 말총 망건으로 정리하고, 곁에 입는 포의 종류에 따라 종립(鬃笠)[마미두면(馬尾頭冕)]을 쓰거나 익선관을 썼다.

하의에는 바지와 니의(裏衣)가 있다. 바지 1벌을 제작하는데 걸감 백토주(白吐紬) 1필, 안감 백정주(白鼎紬) 2필이 들어가며, 니의는 안감 없이 백저포

(白苧布) 1필로 2벌을 만든다. 즉 바지는 겹옷이고 니의는 홀옷임을 알 수 있다. 여름철의 문호인 단오에는 바지 대신 니의를 제작할 옷감만을 올렸다.

삼아(衫兒)는 안감용 흰색 정주(鼎紬)로 만든 홀옷이므로 적삼을 가리키는 옷이라고 생각된다. 장삼 아와 단삼아, 즉 짧은 것과 긴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삼아 위에는 저고리에 해당하는 과두(裹肚)를 입었다. 과두에는 솜을 넣은 유과두(襦裹肚)와 겹과두가 있다. 과두라는 표기가 드물고, 유물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의복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진상의 예로 볼 때 적삼 위에 입은 저고리로 파악된다.

입음새를 보자면 동지에서 설에 이르는 추운 계절에는 하의로 겹바지를 입고 상의에 적삼, 솜저고리, 솜철릭, 솜더그레를 껴입었으며, 춘추로는 겹바지, 적삼, 겹저고리, 겹철릭, 겹더그레를 입었고, 여름철의 문호인 단오부터는 백저포로 만든 홀바지, 철릭, 더그레를 착용하였다. 단오에 소요되는 옷의 명칭에 겹이라는 접두어를 빼놓은 것으로 보아서 홀옷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오에는 과두와 적삼을 제작할 옷감을 올리지 않았으며 세자에게만 액주름[腋注音]를 올리고 있다. 다른 계절에 올리는 저고리와 적삼은 주(紬)로 제작한 것이므로 여름철에 입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삼이나 저고리 없이 철릭과 더그레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짧은 세자에게는 적삼과 저고리를 아우르는 받침옷인 액주름으로 매무새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추정된다. 남자 복식은 포 위주로 발달되어 저고리가 속옷의 기능을 가졌음을 고려할 때 더위에 속옷을 생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액주름은 임란이후로 사라진 옷이지만 왕실의 복식목록에서는 간간이 접할 수 있다. 『상방정례』인(人), 왕과 왕세자의 법복에 따르는 의대에도 액주름이 포함되어있다. 왕실문헌 중에는 선대의 문헌을 반복하여 기록함으로써 실행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이 반복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지만 『상방정례』는 새롭게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 유의할 때 액주름의 착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바지와 저고리는 홀옷과 겹옷을 막론하고 모두 흰

색으로 하였다. 바지, 저고리 위에 입는 철릭은 대홍색, 초록색, 자적색 등이며 대홍색 철릭이나 초록색 철릭 위에는 자적색 더그레를, 대홍색 철릭이나 자적색 철릭 위에는 초록색 더그레를, 초록색 철릭이나 자적색 철릭 위에는 대홍색 더그레를 입었다. 대홍색 철릭은 임금용이고, 대홍색 더그레는 왕세자용이었다. 철릭과 더그레는 동일한 색을 쓰지 않았으므로 대홍색 철릭이 없는 왕세자에게 대홍색 더그레는 적합한 조합이 될 수 있지만 왕이 입는 대홍색 철릭 위에 대홍색 더그레를 갖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 철릭과 더그레의 안감은 모두 반홍색(蟠紅色) 정주(鼎紬)로 하였다. 여름철에는 왕과 세자 모두 백색으로 철릭과 더그레 일습을 갖추었다.

2. 여자복식

왕실여인이 착용하는 평상복은 반가 여인이 착용하는 복장과 다를 바 없다. 니의(裏衣)[속곳], 赤尗[치마], 삼아(衫兒)[적삼], 고의(串衣)[저고리]가 기본복장이다.

니의는 홀으로 된 하의류 속옷으로 상의류 속옷인 적삼과 짹을 이룬다. 발기에는 니의 대신 단속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니의(裏衣)의 뜻을 새겨 읽으면 단속것, 음을 새겨 읽으면 니의가 된다. 겹으로 된 겹니의는 백토주(白吐紬)로 만들고 홀으로 된 니의는 백저포로 만들었다.

속곳과 적삼 위에는 치마와 고의(串衣)[저고리]를 입었다. 고의(串衣)는 상의로서 하의인 치마와 짹을 이룬다. 고의는 학자마다 관의, 천의, 고의 등으로 달리 부르는데 발기에는 소고의, 당고의 등 저고리의 일종으로 기록한 사례가 많아서 고의로 표기하고자 한다. 『상방정례』인(人)에 의하면 법복에 따르는 의대에 저고리와 고의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기록된 순서로 미루어볼 때 고의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보인다. 또한 대왕대비, 중궁, 빈궁의 의대로는 기록하고 있으나 숙의, 대군부인, 공주의 의복에는 빠져있다. 한편 항례를 기록한 『상방정례』 천(天)에서 대왕대비, 왕비, 세자빈, 현빈²⁾의 일상복을 올리는 물목에는 저고리 없이 고의만 기록되었으며 솜을 넣은 유고의(襦串衣)와 겹고의가 있다. 여름이 시

작되는 단오에는 고의를 올리지 않았고 1년에 한 차례씩 연례진상을 통하여 고의제작에 필요한 국내산 담비털[향돈피(鄕獺皮)]을 올렸다. 이에서 볼 때 고의는 덧저고리를 가리키는 명칭인 동시에 신분상정성을 갖는 저고리 명칭으로 이해된다. 일상복으로 대왕대비, 중궁, 세자빈, 현빈은 반홍색(蟠紅色) 정주(鼎紬)로 안을 댄 초록색 고의와 자적색 고의를 마련하였으며, 중궁은 탄일, 설, 동지에 솜을 둔 대홍색 고의도 마련하였다.

치마는 계절에 따라 홀치마, 겹치마, 솜치마를 지을 수 있는 옷감을 올렸으며 안감에는 항상 백정주를 썼다. 왕비와 대왕대비의 치마는 자적색, 간색(間色), 유청(柳青)색, 초록색이며, 세자빈과 현빈에게는 자적색이나 유청색 치마가 없고 초록색과 간색(間色) 치마가 있다. 자주치마는 정실왕비 외에는 입을 수 없는 최고로 권위 있는 치마색이라는 증언³⁾과 상통하는 기록이다. 사전적 의미의 간색(間色)은 정색(正色)인 적(赤), 청(青), 황(黃), 백(白), 흑(黑)을 제외한 모든 색을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간색(間色)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증하기 어렵다. 간색(間色)에 해당하는 자적색, 유청색, 초록색 등의 색명은 밝히면서 굳이 간색(間色)이라는 범주를 다시 언급한 진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왕과 왕세자 등 왕실남성은 바지, 적삼, 저고리[과두(裹肚)], 철릭, 더그레를 받침 의상으로 입고, 일과에 따라 시사복(視事服)인 곤룡포를 덧입어서 차림새를 완성했다. 대비와 왕비 등 왕실여인은 속곳, 치마, 적삼, 저고리[고의(串衣)]로 구성되는 기본의상을 입고 덧저고리[고의(串衣)]를 입어서 평상시의 차림을 완성하였다.

III. 왕실행사에 따른 의례복

왕실의 각종의례를 실행할 때마다 격에 맞는 의례복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왕실 복식을 담당한 상의원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복식을 준비하여 올렸다. 그 과정은 전례에 따르거나 전교에 따랐으며, 연례적으로 치르지 않

던 왕실행사가 생기면 단자를 만들어서 품의하고 결재하는 과정을 거쳐서 복식을 준비하였다.

평상복은 여름철에 홀옷을 입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겹옷을 마련하였지만 의례복의 경우에는 조선 전기처럼 홀옷을 겹쳐 입는 방식을 고수했다.

1. 일상의례에 따른 복식

왕은 일찍이 일어나 대비나 왕대비 등 어른에게 문안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의하면 세자빈 시절, 세자와 함께 문안드리기를 “인원, 정성 두 성모께는 닷새에 한 번 문안드리고 선희궁께는 사흘에 한번씩 문안드리기로 되어 있으나 거의 날마다 모실 적이 많으니 그때는 궁중의 법이 엄하여 예복을 하지 않으면 감히 뵈옵지 못하고, 날이 늦은 뒤에는 못하고, 새벽의 문안은 때를 어기지 않으려고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듯이 해뜨기 전에 문안을 올리되 매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이나 왕비가 왕실 어른께 인사를 올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왕이나 왕세자는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추었으며, 왕비나 세자빈은 초록당의를 입었다. 대개 속저고리는 분홍이나 보라색으로 하고 겉저고리는 송화색으로 하였다.⁴⁾

왕은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다. 문안인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 왕이 처리하는 군국기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만기(萬機)라고도 하였다. 최고 통치권자로서 조참(朝參), 상참(常參), 조계(朝啓), 윤대(輪對)를 받았다. 매일 아침 편전(便殿)에서 국왕을 배알하는 약식조회인 상참(常參)에는 종6품 이상의 문무관인이 참여하였으며, 매월 5일, 11일, 21일, 25일에는 백관이 임금님께 나아와 조회를 올리는 조참(朝參)을 거행하였다.⁵⁾ 조회가 끝나면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결정하는 조계(朝啓)의 시간을 가졌는데, 의정부와 육조, 한성부를 비롯하여 당상관 이상의 문무관리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각 현안을 결재하고, 처리하고 지시하는 시사(視事)가 이어지고, 6품 이하의 하급관리들을 만나 보고받고 면담하는 윤대(輪對)를 가짐으로써 오전 업무를 종결하였다. 오후에는 지방 관료를 면담하고, 야간의 궁

궐수비나 숙직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왕의 공식 업무를 종결하였다. 낮 동안의 업무가 밀려있으면 야간 집무를 보았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문안인사를 드립으로써 공식일과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강(朝講), 주강(晝講), 석강(夕講)의 공부시간[경연(經筵)]을 가졌는데 왕의 자질을 쌓는 중요한 일과였지만 하루 세 차례의 경연을 소화하기 힘들 경우 조강만 하거나 주강만으로 끝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상적인 하루일과에 왕은 익선관과 곤룡포로 구성되는 시사복(視事服)을 입었다.⁶⁾ 익선관은 모라(毛羅)로 싸고 두후(頭後)에 대각(大角)과 소각(小角)을 위로 향하게 달았다. 곤룡포는 대홍단(大紅綢)으로 제작하고 여름용은 대홍사(大紅紗)로 하였으며, 포에는 첨금한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를 달았다. 옥대의 바탕은 대홍단(大紅綢)으로 싸고 금화(金畫)를 그린 위에 조옥(雕玉)을 붙였으며, 화(靴)는 검은색 고라니가죽[케자(麌子)]으로 만들고 여름용은 검은색 담비가죽[사피(斜皮)]⁷⁾으로 제작하였다.⁸⁾

2. 각종 왕실 행사와 절차에 따르는 복식

1) 능행(陵幸)⁹⁾

임금이 능에 거동하는 것은 국왕의 윤리적 행사이지만 능행 후에는 진법연습[습진(習陳)]과 군대사열[열무(閱武)]을 거행함으로써 왕이 군사를 직접 점검하고 군사권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았다. 영조와 정조는 군사목적 외에도 대민 직접 접촉의 기회로 삼았으며 자신의 이념적 기준을 천명하는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능행길에는 용복을 입고, 능이나 원을 배알할 때는 익선관(翼善冠), 참포(夥袍),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는데¹⁰⁾ 능행을 위하여 준비한 복식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립(鬃笠) 2부, 대홍운문필단용포(龍袍), 초록운문필단 더그레, 솜을 둔 대홍색 용흉배(龍胸背) 좌우건(左右肩)¹¹⁾ 1부, 대홍 광다회(廣多繪) 1부, 남 광다회 1부, 백양모(白羊毛) 정(精)¹²⁾을 갖춘 검은색 고라니가죽 화(靴) 1부, 종립에 꽂을 깃털[벌(伐)달기우(月只羽)] 5쌍, 백면포 참



<그림 1> 철종어진¹³⁾

포(夥袍), 백자포 참포(夥袍), 모라(帽羅) 익선관 1부, 오서대(烏犀帶) 1부, 백양모(白羊毛) 정(精)을 갖춘 연녹피화(烟鹿皮靴) 1부 등이다.

시사복(視事服)이기도 한 대홍색 곤룡포 속에는 바지·저고리·철릭, 더그레를 받쳐 입는데 바지·저고리, 철릭은 일상적으로 갖추는 받침옷이므로 복식 목록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광다회의 존재는 철릭이 착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반계수록(磻溪隧錄)』에는 공복(公服) 속에 반드시 첨리(貼裡), 광대(廣帶)를 하는데 이는 고도첨리(固道貼裡)로서 곧 용복(戎服)이라고 하였다. 불시에 복과 종을 치면 관리들은 어디서나 즉시 대열을 짓고 공복만 벗으면 다른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바로 용복이 되었던 것이다.¹⁴⁾ 곤룡포 속에는 용복을 갖추었고 철종어진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종립을 쓰고 깃털을 꽂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곤룡포의 속옷[內衣]이 바로 군복(軍服)의 윗옷[上衣]인데, 4월 이전에는 단(綢) 겹옷을 입고 5월 이후에는 사(紗) 훌옷을 입는다.”¹⁵⁾ 여기에 언급된 곤룡포의 속옷은 더그레, 곧 폐자이며 협수의 웃옷이다. 순조 34년, 좌의정 심상규는 이병형의 상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군복은 개주(介胄)의 이의(裏衣), 용복은 모포(帽袍)의 이의(裏衣)로 양자를 구별하였다.¹⁶⁾ 용복은 주립(朱笠)·철릭이 짹을 이루며, 군복은 전립(氈笠)·협수(挾袖)가 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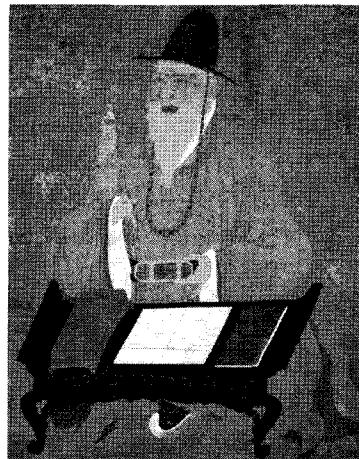


〈그림 2〉 ①봉사도 중 5폭 ② 11폭 ③ 16폭¹⁷⁾

이룬다. 용복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철릭은 소매가 점차 광수(廣袖)로 변하여 명칭은 용복이지만 군사적 용도보다 능행이나 원행시(遠行時) 문무백관이 의장을 갖추는 용도로 착용했다.

정조 17년, 거동할 때의 복장을 논의하면서 시위하는 자가 주립(朱笠)에 호수(虎鬚)와 작우(雀羽)를 꽂고, 철릭에 활을 메고 칼을 차는 용복을 입는데 용복에 비하여 간편한 군복으로 하자¹⁸⁾는 언급이 보인다. 그에 앞선 논의에서도 현릉원의 행차에는 여러 날이 걸리므로 정조가 온천에 행차할 때처럼 평용복이나 군복을 입겠다고 하교하였고¹⁹⁾ 실제로 평용복이나 군복을 착용한 사실²⁰⁾은 주목할 만하다.

1725년 영조 책봉례에 참석했던 청나라 부사 아극돈(阿克敦)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사행(朝鮮使行)을 토대로 봉사도(奉使圖)²¹⁾를 그렸다. 거기에는 종립을 쓰고 단령을 입은 무관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2-①〉은 칙사를 호위하는 무관으로 단령을 입고 호수를 꽂은 종립을 쓰고, 활과 화살을 갖추었다. 도성안 풍경을 그린 〈그림2-②〉와 〈그림2-③〉의 책봉도 하단에 도열한 무관은 호수를 꽂은 종립에 단령을 입고 칼을 찼다. 이러한 차림은 이미 16세기 이현보(1467-1555)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다만 이현보는 립자에 호수를 꽂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장식을 제거하기도 했던 착용예를 볼 때 같은 차림새로 분류할 수 있다. 일종의 평용복이라고 본다. 임금은 종립을 쓰고 홍색용포를 입어서 평용복의 매무새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철릭과 더그레는 용포



〈그림 3〉 이현보²²⁾

속에 받쳐 입고 홍색용포를 걸옷으로 삼았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임금이 거동할 때 따르는 행렬 중 무겸(武兼) 선전관(宣傳官), 사복시관(司僕寺官) 등이 상복(常服)에 폐검(佩劍)을 갖추는데²³⁾ 이것이 용복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으나 상복으로 복식명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평용복은 아니라고 본다. 용복용 관모에는 공작깃[翠雨]이나 호수(虎鬚)를 꽂아 장식하였고, 깃을 꽂는다는 점 때문에 우립(羽笠)으로도 불렸으며 능이나 원을 배알할 때는 조우를 빼다.

임금은 홍살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라(帽羅) 억선관, 백면포 또는 백저포로 만든 참포(夥袍)로 갈아입고 오서대(烏犀帶)를 띠었으며, 백양모 정(精)을 갖

춘 연녹피화(烟鹿皮靴)를 신었다.

2) 친립열무(親臨閱武)²⁴⁾

왕이 최고통수권자로서 몸소 군대를 사열하는 의례를 친립열무라고 한다. 친립열무에는 종립 1부, 대홍운문필단 용포, 초록운문필단 더그레, 솜을 둔 대홍 용흉배 좌우견 1부, 대홍 광다회 1부, 남 광다회 1부, 자적 광다회 1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黑麂子皮靴) 1부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차림은 앞서 능행길에 입었던 복식과 동일하다.

3) 친립모화관관무재(親臨慕華館觀武才)²⁵⁾

관무재(觀武才)란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로서 최고통수권자인 임금이 몸소 군대를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재를 시험보이는 것이다.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 치르게 하고, 시험 과목은 11기(技) 가운데 품주(稟奏)하여 4기를 시험하였다.

임금은 열병의례에 착용했던 종립을 벗고, 익선관을 쓴 상복(常服)차림을 하였다. 모라(帽羅) 익선관 1부, 대홍운문필단 용포, 남운문필단 더그레, 솜을 둔 대홍 용흉배 좌우견 1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를 준비하였다.

4) 친행북한(親行北漢)²⁶⁾

영조대에 북한산에 거동할 때 임금은 융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창의문밖으로 나갔다.²⁷⁾ 그 차림은 종립 2부, 대홍운문필단 용포, 초록운문필단 더그레, 솜을 둔 대홍 용흉배 좌우견 1부, 대홍 광다회 1부, 남 광다회 1부, 자적 광다회 1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로 구성되었다.

5) 영칙거동(迎勅舉動)²⁸⁾

황제가 내린 칙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화관에 거동할 때 임금은 상복을 갖추었다. 모라(帽羅) 익선관 1부, 대홍운문필단 용포, 남운문필단 더그레, 솜을 둔 대홍 용흉배 좌우견 1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 등 상복에 따르는 구성을

갖추었다.

중국 황제가 조선국왕을 인정한다는 고명(誥命)을 가지고 오는 칙사를 맞이하는 시점이 선왕의 상중(喪中)인 경우에는 임금이 백포(白袍)·오서대(烏犀帶)·소의장(素儀杖)의 소복차림으로 모화관에 행차하고, 아청곤룡포(鴉青袞龍袍)·익선관(翼善冠)·홍정옥대(紅鞶玉帶)·흑화(黑靴)·길의장(吉儀仗)으로 조서(詔書)를 맞이하였으나 임금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상중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대홍곤룡포와 익선관을 갖추었다.

6) 존승(尊崇) · 진연(進宴)²⁹⁾

왕 · 왕비 · 왕대비 ·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행사인 존승(尊崇)과 왕실 잔치인 진연(進宴)에는 상복을 착용했다. 임금과 세자는 익선관 · 곤룡포차림이며, 대왕대비 · 왕비 · 세자빈은 적의를 갖추지만 용보를 단 법복용 적의와 구별되는 상복용 적의 즉 옥대, 패옥, 규를 갖추지 않고 봉황보를 단 적의를 입었다. 상복용 상(裳) 전삼후사(前三後四) [전행웃치마]에는 용스란이 아닌 봉스란을 갖추었으며 세자빈은 남색 겹군으로 전행웃치마를 대신했다. 또한 진주를 제거한 법복용 석파 달리 상복용 석에는 대진주 6개를 장식했다.³⁰⁾ 존승이나 진연을 위하여 각 전에 올린 복식은 다음과 같다.

대전에는 모라(帽羅) 익선관 1부, 종립 1부, 말총[馬尾]망건 1부, 대홍운문필단 용포(龍袍), 남운문필단 더그레, 초록운문필단 니의(裏衣), 솜을 둔 대홍색 용흉배(龍胸背) 좌우견(左右肩) 1부, 자적토주(吐紬) 겹더그레, 초록토주 겹철릭, 대홍면포 겹철릭, 백토주 겹파두, 백정주(鼎紬) 삼아, 백토주 겹바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 흑옹피삼혜(黑熊皮鞍鞋) 1부를 준비하여 올렸다. 초록운문필단 니의(裏衣)는 소재와 색상으로 볼 때 바지류라고 볼 수 없으며 기록된 순서로 미루어 더그레의 받침옷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더그레의 받침옷은 철릭이지만 철릭으로 쓰지 않고 니의로 표기한바 당시 단령과 짹을 이루던 직령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세자궁에는 모라(帽羅) 익선관 1부, 말총망건 1부,

아청운문필단 용포(龍袍), 대홍운문필단 더그레, 초록운문필단 니의(裏衣), 솜을 둔 아청색 용흉배(龍胸背) 좌우견(左右肩) 1부,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1부를 준비하여 올렸다. 대전에 올린 종립, 철릭, 과두, 삼아, 바지 등 편복용 받침옷은 생략되었다.

대왕대비전에는 자적향직 적의(翟衣), 자적향직 별의(別衣), 자적향직 내의(內衣), 금의(錦衣) 향직 수(綬) 자적향직 폐슬(蔽膝), 대대(大帶), 모단(冒綬) 하피(霞帔), 남향직 전행웃치마, 자적라 면사(面紗), 자적 봉흉배, 적말, 적석을 준비하여 올렸다.

중궁전에는 대홍향직 적의(翟衣), 대홍향직 별의(別衣), 대홍향직 내의(內衣), 금의향직 수(綬), 대홍광적 폐슬(蔽膝), 대대(大帶), 모단 하피(霞帔), 남향직 전행웃치마, 자적라 면사(面紗), 대홍 봉흉배, 적말, 적석을 준비하여 올렸다.

세자빈궁에는 아청향직 적의(翟衣), 대홍향직 별의(別衣), 대홍향직 내의(內衣), 금의향직 수(綬), 대홍광적 폐슬(蔽膝), 대대(大帶), 모단 하피(霞帔), 남향직 겹군(祫裙), 자적라 면사(面紗), 아청 봉흉배, 흑말, 흑석을 준비하여 올렸다.

7) 왕세자 입학 - 청금복(青衿服)³¹⁾

『상방정례』지(地)에는 청금복을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청금복은 태종11년(1411) 명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유생복으로 정한 이래 『경국대전』에 “생도가 학내에서는 치포건(緇布巾)에 단령을 입으면 유학(儒學)은 청금을 입는다”라고 하여서 청금은 곧 유생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왕세자는 입학과 문선왕(文宣王)에게 석전(釋奠)하는 의식³²⁾에 착용하였다. 청금복은 아청소자(鵝青素紗)로 제작하고, 청금복에 따르는 더그레는 남사(藍紗), 받침옷[內衣]은 초록필단으로 제작하였다. 내의(內衣)는 앞서 언급한 니의(裏衣)의 다른 표기이며 반가에서 흔히 입던 편복 포류였을 가능성이 있다. 청금복에는 독옥대(禿玉帶)를 띠고, 양어깨와 가슴, 등에 다는 아청색 용보를 갖추되 여름용 양흉배(涼胸背)와 춘추동용 유흉배(襦胸背)를 준비하였다. 또한 럼자의 안팎을 남릉(藍綾)으로 싸고 화려하게 장식한 청초금도다익

장립(青綃金都多益粧笠)을 세자와 세손용 입자로 준비하였는데 이것은 입학, 관례, 가례 등에 착용하였다.³³⁾

8) 숙의(淑儀) 간택³⁴⁾

숙의간택은 비빈을 간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간택 후에는 별궁으로 가서 가례를 준비하고 왕실 법도를 익혔다. 숙의간택 항목에 기록된 복식목록은 가례를 치르기 전에 별궁으로 향할 때의 복장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주라(潤州羅) 너울, 너울에 갖추는 남릉장립(藍綾粧笠)에 유청필단 영자(纓子), 대홍진사 매듭을 달고, 수식체발에는 25개의 대·중·소 흑각잠을 준비하였으며, 아청사 원삼에는 대홍사 안감을 넣고, 대홍광적 대대(大帶)를 갖추고, 남사(藍紗) 상(裳) 등을 준비하여 흑칠합 2부에 넣었다.

9) 숙의(淑儀) 가례³⁵⁾

숙의가례에 준비하는 복식은 적의를 제외하고는 왕비나 세자빈 가례에 소요되는 의대와 유사하다. 숙의간택에 필요한 복식 외에 대홍광적 단노의(單露衣) 1, 대홍광적 겹장삼 1, 아청라 중삼(中衫) 1, 남광사 전면사(前面紗) 1, 자적라 수사지(首紗只) 1, 대홍라 수사지(首紗只) 1, 초록주 솜저고리 3, 남주 겹저고리 1, 초록주 호수(胡袖) 2, 남주 솜치마 2, 남주 겹치마 2, 백정주 겹니의(祫裏衣) 1, 백정주 단니의(單裏衣) 1, 백정주 유개오(襦蓋襖) 2, 백초 활한삼(闊汗衫) 3, 백정주 활한삼 3, 백정주 삼아(衫兒) 2, 백무문릉 단말군(單袜裙) 1, 생초 말군 2, 자적광적 보을리(甫乙裏) 1, 모단 수파(首把) 1, 자적라 대요(帶腰) 1, 대홍라 대요 1, 대홍라 도다익대(都多益帶) 1, 남라 대(帶) 1, 초록주 유금(襦衾) 4, 자적주 침장(寢帳) 1, 청초립(青綃笠) 1, 조라(早羅) 너울 1, 흑옹피온혜(黑熊皮溫鞋) 1을 준비하였다.

이들 품목은 노의, 장삼과 그에 따른 부속품, 치마, 저고리, 속옷, 쓰개류, 신발 등이다. 1847년(현종 13)에 있었던 현종과 후궁 경빈김씨와의 가례를 기록한 『명미가례시일기』에 의하면 동뢰연을 치르기 위하여 별궁에서 궁궐로 입궁할 때는 대홍광적 단노의(單露

衣)를 입었고, 동뢰연에는 대홍광적 겹장삼을 갖추었다.³⁶⁾

10) 대군가례³⁷⁾

(1) 대군(大君)의 복

『국조오례의』³⁸⁾에 의하면 직위가 있는 자의 혼례복은 공복(公服)으로 하였는데 일반인들은 혼인할 당시에 직위를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혼례복으로 공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없었고 대개는 자색단령을 선호하였다. 대군은 면주(綿紬) 목면(木棉)으로 만든 공복을 입는다는 오례의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대홍색 수주(水紬)로 만든 공복을 마련하였다.

남색 남경초(南京綃)로 안을 받친 흥색 남경초(南京綃) 포(袍) 1, 남색 수주(水紬)로 안을 받친 대홍색 수주(水紬) 겹단령 1, 백색 수주(水紬)로 안을 받친 초록색 수주(水紬) 겹더그레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초록색 수주 솜칠릭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초록색 수주 솜액주름[腋注音]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백색 수주 솜과두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백색 수주 겹과두 1, 백색 수주 장삼아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솜바지 1, 백색 수주로 안을 받친 겹바지 1, 백색 수주 홀바지 1, 백색 수주 호슬(護膝) 1, 자적수주 겹침장 1, 모라(毛羅) 사모 1, 복두 1, 소오건(小烏巾) 1, 상아홀 1, 흑사피투혜(黑斜皮套鞋) 1, 망건 1,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 1, 흑사피삽혜(黑斜皮鞍鞋) 1을 준비하였다.

(2) 부인(夫人)의 복³⁹⁾

대홍광적 단노의(單露衣) 1, 대홍광적 겹장삼 1, 백무문포 단말군(單袜裙) 1, 백초 말군 1, 초록수주 솜저고리 2, 남수주 겹저고리 1, 초록수주 솜호수(胡袖) 1, 남수주 솜치마 2, 남수주 겹치마 1, 백수주 삼아(衫兒) 2, 백수주 단니의(單裏衣) 1, 대홍라 도다익대(都多益帶) 1, 대홍라 오지(五脂) 1, 흑옹피온혜(黑熊皮溫鞋) 1을 준비하였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친영례를 혼인의례의 모델로 삼아 장려하였으나 대개는 신부 집에서 동뢰연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올리는

반친영으로 혼인의례를 치렀다. 오직 왕실에서만 온전한 친영례를 치렀으므로 대군부인은 동뢰연을 치를 신랑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그 때는 조선초기부터 길을 갈 때 입는 부인의 예복인 노의를 입고, 동뢰연에는 대홍광적 겹장삼을 입었다고 본다.

11) 공주가례⁴⁰⁾

(1) 공주의 복

대홍광적 단노의(單露衣) 1, 대홍광적 겹장삼 1, 남광사 전면사(前面紗) 1, 자적라 수사지(首紗只) 1, 대홍라 수사지(首紗只) 1, 자적라 대요(帶腰) 1, 대홍라 대요(帶腰) 1, 자적광적 보을리(甫乙裏) 1, 백초 활한삼(濶汗衫) 2, 백릉 단말군(單袜裙) 1, 초록주 솜저고리 2, 남주 겹저고리 1, 초록주 솜 호수(胡袖) 2, 백정주 겹니의(裯裏衣) 1, 백정주 단니의(單裏衣) 1, 백정주 유개오(襦蓋襖) 2, 백정주 삼아(衫兒) 2, 남주 솜치마 2, 남주 겹치마 2, 대홍라 도다익대(都多益帶) 1, 남라 대(帶) 1, 자적주 침장(寢帳) 1, 초록주 유금(襦衾) 4, 청초립(靑絹笠) 1, 조라(早羅) 너울 1, 흑옹피온혜(黑熊皮溫鞋) 1을 준비하였다.

복식목록으로 살펴보건대 왕비나 세자빈이 노의를 입을 때 남색 경의를 갖추었던 것에 비하여 공주는 남광사 전면사를 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식의례가 그만큼 단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의빈(儀賓)의 복⁴¹⁾

남수주로 안을 받친 대홍수주 점(粘)겹단령 1, 백면포로 안을 받친 대홍면포 겹단령 1, 백정주로 안을 받친 초록수주 솜더그레 1, 백정주로 안을 받친 초록수주 겹더그레 1, 백정주로 안을 받친 초록수주 솜액주름 1, 백면포 액주름 1, 모라 사모 1, 복두 1, 소오건(小烏巾) 1, 학정대(鶴頂帶) 1, 서속대(犀束帶) 1, 상아홀 1, 망건 1, 흑사피투혜(黑斜皮套鞋) 2,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 1, 백양모 정(精)을 갖춘 연녹피화(烟鹿皮靴) 1, 흑옹피삽혜(黑熊皮鞍鞋) 1을 준비하였다. 부마는 대군보다 더욱 겹소한 소재로 만든 혼례복을 착용하여 면주(綿紬) 목면(木棉)으로 만든 공복을 입는다는 오례의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IV. 왕실 법복(法服)⁴²⁾

1. 책봉(冊封)-세자궁 책례(冊禮)

세자, 세자빈, 왕비 등 왕실의 핵심인사는 책봉을 통하여 그 지위를 대내에 알렸다. 특별히 세자를 책봉하는 의례인 세자궁 책례는 미래의 왕을 세우는 일이므로 국가의 중요한 의례였다. 책봉할 때에는 책봉 명령인 교명과 턱을 기리는 책[죽책 또는 옥책], 지위에 따르는 존호를 새긴 인장을 내렸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지만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교명은 책봉할 때 제조하였으며 교명은 책봉과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세자책봉은 관례를 치르기 전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온전한 세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책봉 후에 관례를 올려야 세자로서의 권위가 완성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방정례』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교명(敎命)에 따르는 복식 목록에 관례 복식 일체를 포함하였다.⁴³⁾

왕세자 책봉을 위해서는 쌍동계(雙童髻) · 공정책(空頂幘), 평천관 · 면복 일습[아청 면복, 백숙초 중단, 금의향직 수, 폐슬, 대대, 방심, 청옥규, 패옥, 적말, 적석], 원유관 · 강사포 일습[대홍숙초 강사포, 백숙초 중단, 금의향직 수, 폐슬, 대대, 청옥규, 패옥, 적말, 적석], 익선관 · 곤룡포 일습[아청운문필단 용포, 대홍운문필단 더그레, 자적초 대, 솜을 둔 아청용(龍)홍배, 여름용 아청용(龍)홍배, 독옥대(禿玉帶)],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旄子皮靴), 종립[馬尾頭冕] · 상시복(常時服) 일습[아청운문필단 상시복철릭, 대홍 광다회]을 준비하였다. 평상시 왕세자의 면복과 강사포는 각각 흑칠각에 봉안해두었으며⁴⁴⁾, 다른 의대는 종류에 따라 용포합, 상시복합 등에 넣어 올렸다.

『세종실록』오례의에 규정된 책왕세자의(冊王世子儀)에 의하면 임금은 면복, 신하는 조복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조가 즉위한 1725년에 장자 행(衍)[장조]를 효장세자로 책봉할 때에 임금은 길복

(吉服)을 입고, 신하는 조복(朝服)차림이었으며, 왕세자는 흑립에 청철력을 입었다.⁴⁵⁾ 효장세자 사후 사도세자를 책봉할 때에는 임금이 면복을 입고, 신하는 조복을 입었으며 왕세자는 쌍동계(雙童髻) · 공정책(空頂幘) · 칠장복(七章服)을 갖추었다.⁴⁶⁾ 사도세자의 아들 산이 왕세손으로 책봉받을 때에 세손은 오장복을 갖추었다.⁴⁷⁾ 왕비와 왕세자빈의 책봉에 왕은 면복을 입고 신하는 조복을 입으며 왕비와 세자빈은 명복에 수식을 갖추는 것이지만⁴⁸⁾ 세종은 왕세자빈을 책봉하면서 면복이 아닌 원유관, 강사포를 입기도 하여서⁴⁹⁾ 때에 따라 복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례(冠禮)-세자궁 관례(冠禮)

왕세자의 관례전 책복(幘服) 제도에 의하면 면복을 착용해야 할 때 쌍동계 · 공정책⁵⁰⁾을 쓰고, 강사포에도 쌍동계 · 공정책을 쓰며, 상복(常服)으로 입는 흑곤룡포, 수정대에도 쌍동계 · 공정책을 썼다.⁵¹⁾ 쌍동계를 만드는데 모단(冒綬)이 소요되었으며, 공정책은 공정책 집[家]에 담고, 공정책 이엄(耳掩)은 공정책 이엄각(耳掩閣)에 담았으며 연두건은 번홍정주(蟠紅鼎紬)로 만든 홀보자기에 쌌다.⁵²⁾ 관례를 위하여 준비한 복식은 평천관, 말총망건, 백옥환관자, 면복일습, 원유관 · 강사포 일습, 종립, 아청운문필단 용포, 대홍운문필단 더그레, 초록운문필단 내의, 자적초대(帶), 솜을 둔 아청(龍)홍배,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旄子皮靴), 아청광화단 직령(直領), 대홍 세조대(細條帶) 등으로 삼가복합(三加服函), 삼가관합(三加冠函)에 넣어 준비하였다.

왕세자가 관례에 나올 때는 어린이로서의 시복(時服)차림을 하였다. 시복은 용포(龍袍)이므로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익선관 · 곤룡포에 해당하지만 용포 차림으로 입장하게 되면 초가(初加)예식에 시행할 것이 없으므로 원자(元子)로서 평소에 하던 쌍동계에 옥잠을 꽂고, 공정책을 썼으며 아청색 직령에 조대(條帶)를 띠었다.⁵³⁾ 순조대에 이르러 아청직령은 초록도포로 변했다.⁵⁴⁾ 그 이유는 영의정 서윤보 등이 왕세자관례에 대하여 헌의하는 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관례편(冠禮篇)에 ‘장

차 관례할 자가 처음 방에서 나올 때에 사규삼(四揆衫)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규삼은 곧 중국 사람이 관례하기 전에 평소 입는 편복(便服)입니다. 우리 왕조의 직령과 도포는 모두 편복입니다. 옛날에는 사대부가 일상생활할 때 대부분 직령을 입었고, 근세에는 대부분 도포를 입습니다. 입는 옷이 다른 것은 비록 습속이 다르기 때문이나 그 실상은 같은 것입니다. 대조(大朝) 소조(小朝)의 강연(講筵) 복색은 법강(法講)에는 으레 곤포(袞袍)를 입고, 소대(召對)에는 으레 도포를 입었습니다. 지금 왕세자의 관례에 처음 방에서 나올 때에 도포를 착용한다면 열성조(列聖朝)의 예와 경신년의 특교(特教) 및 중국의 사관례(士冠禮), 『오례의』에 기재된 시복(時服)의 글과 모두 어긋남이 없을 듯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⁵⁵⁾ 초가(初加)에는 익선관·곤룡포의 상복(常服)을 입고, 재가(再加)에는 원유관·강사포의 조복(朝服)을 입으며, 삼가(三加)에는 면복을 갖추었다.⁵⁶⁾ 왕세자의 원유관은 8량이며, 면류관은 8류, 곤복은 9장복에서 산·용이 빠진 화(火)·화충(華蟲)·종이(宗彝)·조(藻)·미(米)·보(黼)·불(黻)의 7장복이다.

3. 국훈

1) 왕비 가례(嘉禮)

(1) 대전 법복(法服)

대전 법복으로는 면복·평천관, 강사포·원유관을 준비하였다. 평소에 왕의 면복과 강사포는 각각 상의 원 면복각과 강사포각에 봉안해두었다.⁵⁷⁾ 의대(衣襍)는 반홍정주로 안을 받친 초록토주 솜철릭[天益], 백주로 안을 받친 백토주 솜과두(裹肚), 백정주로 안을 받친 백토주 액주름[腋注音], 백정주 장삼아(長衫兒), 백정주 단삼아(短長兒), 태병(苔并)백주로 안을 받친 솜바지, 백정주 홀바지, 마미두면, 마미망건,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旄子皮靴),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 흑옹피삽혜(黑熊皮鞶鞋)를 준비하였다.

가례의 절차 중 면복을 입는 의례는 간택된 왕비 집에 청혼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는 납채의(納采儀)와 가례의 핵심절차인 친영의(親迎儀)이며, 혼인

의 징표로 왕비 집에 예물을 보내는 납징의(納徵儀)와 책비의(冊妃儀)에는 원유관·강사포를 입었다.

(2) 중궁전 법복(法服)

중궁전 법복은 51편의 원직을 단 대홍향직 적의, 대홍향직 별의, 대홍향직 내의, 대홍향직 폐슬, 대대, 금의향직 수, 모단(冒綬) 하폐, 남향직 전삼후사(前三後四) 상(裳), 자적라 면사, 폐옥, 백옥규, 화옥대(吠玉帶), 적말, 적석, 홍배4쌍으로 구성된다. 법복은 왜주홍칠합 1부(部)에 담아 홍주3폭 홀보자기로 쌌다. 의대에는 홍배 2쌍을 단 대홍향직 금원문 노의, 대홍향직 홍배 겹장삼, 대홍광직 겹장삼, 대홍광직 개오(蓋燠), 황광사 중삼(中衫), 남광사 경의(景衣), 자적광사 겹면사, 자적향직 고의[串衣], 초록토주 고의, 자적향직 솜저고리, 초록토주 솜저고리, 자적초 겹저고리, 자적토주 솜 호수(胡袖), 대홍광직 겹치마, 남광직 솜치마, 자적토주 솜치마, 백토주 겹니의(腋裏衣), 초록정주 세수장삼, 백초 활한삼(潤汗衫), 백초 삼아(삼야), 대홍라 대요(帶腰), 대홍향직 대(帶), 자적라 노의대(露衣帶), 자적초 자초립(紫絳笠), 자적라 겹너울, 자적향직 화온혜(花溫鞋), 흑옹피화온혜(黑熊皮花溫鞋)가 있다. 각 의대는 흑칠합 4부(部)에 나누어 담았으며 함은 홍주 홀보자기로 쌌다.

2) 세자궁 가례(嘉禮)

(1) 세자궁 법복(法服)

세자궁법복으로 면복, 아청소운문필단 용포, 대홍소운문필단 더그레, 익선관을 준비했다. 의대는 반홍정주로 안을 받친 초록토주 솜철릭[天益], 백주로 안을 받친 백토주 솜과두(裹肚), 백정주로 안을 받친 백토주 액주름[腋注音], 백면포로 안을 받친 백면포 액주름[腋注音], 백정주 장삼아(長衫兒), 백정주 단장아(단장아), 태병(苔并)백주로 안을 받친 솜바지, 백정주 홀바지, 마미두면, 마미망건,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궤자피화(黑旄子皮靴), 백양모 정(精)을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 흑옹피삽혜(黑熊皮鞶鞋)이다. 왕의 가례에는 원유관·강사포를 준비하지만 세자궁법복에는 원유관·강사포가 빠져있다. 왕이 원유관·강사포를 입고 납징의와 책비의에 참여하는 것과 달

리 왕세자는 남정의와 책빈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 가례도감의궤를 살펴보면 왕세자는 동뢰연에 원유관·강사포를 착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 가례법복에 강사포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방정례』를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왕세자도 왕처럼 동뢰연에 면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빈궁 법복(法服)

빈궁법복은 51편의 원적을 단 아청향직 적의, 대홍향직 별의, 대홍향직 내의, 대홍광적 폐슬, 대대, 금의향직 수, 모단(冒綵) 하피, 남향직 전삼후사(前三後四) 상(裳), 자적라 면사, 폐옥, 청옥규, 독옥대(禿玉帶), 흑말, 흑석, 흥배4쌍으로 구성된다. 법복을 흑칠함 1부(部)에 담아 홍주 3폭 홀보자기로 쌌다. 의대에는 대홍향직 노의, 대홍향직 흥배 겹장삼, 초록광적 원삼, 대홍광적 개오(蓋襖), 황광사 중삼(中衫), 남광사 경의(中衫), 자적라 겹면사, 자적향직 고의[串衣], 초록토주 고의, 자적향직 솜저고리, 초록토주 겹저고리, 자적초 겹저고리, 자적토주 솜호수(胡

袖), 대홍광적 겹치마, 남광적 솜치마, 자적토주 솜치마, 백수주 겹니의(裯裏衣), 초록주 세수장삼, 백숙초 활한삼(潤汗衫), 백숙초 삼아(衫兒), 자적라 대요(帶腰), 대홍향직 대(帶), 남광사 노의대(露衣帶), 청초청초립(靑絹笠), 자적라 겹너울, 자적향직 화온혜(花溫鞋), 흑옹피화온혜(黑熊皮花溫鞋)가 있다. 각 의대는 대홍주 보자기에 싸서 흑칠 의대함 6부(部)에 나누어 담았다.

V. 결론

왕실의 모든 의례는 곧 국가 의례였으므로 의례의 격에 맞는 복식을 준비하여 국가의례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상방정례』는 왕실복식의 매뉴얼 기능을 하였다. 왕실 의례복은 전교에 따라 조제하여 올리거나 단자를 만들어 품의한 후 낙점이 내려오면 실행하였고 평상복은 항상 이루어지는 진상의 예로 의복의 재료를 올렸다.

〈표 1〉 왕실의 일상복식

평상복	왕· 세자	겨울	겹바지 / 적삼[衫兒], 솜저고리[裹肚], 솜칠릭, 솜더그레
		봄·가을	겹바지 / 적삼[衫兒], 겹저고리[裹肚], 겹칠릭, 겹더그레
		여름	왕 세자 홀바지 / 홀칠릭, 홀더그레 홀바지 / 홀액주름, 홀칠릭, 홀더그레
일상 의례복	왕· 세자	겨울	속곳[裏衣], 겹치마 또는 솜치마 / 적삼[衫兒], 솜저고리[串衣], 덧저고리[串衣]
		봄·가을	속곳[裏衣], 겹치마 / 적삼[衫兒], 겹저고리[串衣]
		여름	단속곳[裏衣], 홀치마 / 적삼[衫兒]
일상 의례복	대비· 왕비· 세자빈	봄·가을·겨울	익선관, 평상복, 대홍단(綵) 곤룡포, 옥대,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여름	익선관, / 평상복, 대홍사(紗) 곤룡포, 옥대, 흑사피화(黑斜皮靴)
		봄·가을·겨울	평상복, 당의, 흑옹피(결화)온혜(黑熊皮結花溫鞋)
		여름	평상복, 당의, 백당피초혜(白唐皮草鞋)

〈표 2〉 왕의 용포 착용사례

능행	능행	종립, 자우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참배	익선관 / 평상복, 참포, 오서대, 연록피화(烟鹿皮靴)
친립열무		종립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친립모화관관무재		익선관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친행복한		종립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영축기동		익선관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준중·친역		익선관 / 평상복, 용보를 단 대홍곤룡포,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상방정례』의 규례는 복식의 차별화로 착용자의 위엄을 높이는 신분사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왕실의 평상복은 〈표 1〉에서 정리한바와 같다. 반가의 평상복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의[串衣], 과두(裹肚) 등 명칭에 차이를 두어 구별하였다.

의례복은 예가 중해질수록 의복의 종류에 많은 차이를 두었다. 왕실 여인의 가례복식을 예로 들자면 왕비의 경우가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이 세자빈, 숙의, 공주, 대군부인 순이다. 또한 액주름, 노의 등 일반인에게는 더 이상 착용되지 않던 조선전기의 복식을 착용한다던지 홀옷을 겹쳐 입는 조선 전기의 착용방식을 왕실에서는 차별화의 수단으로 지속했다고 본다.

왕, 왕세자, 왕비, 세자빈 등 왕실의 핵심인물 만이 착용할 수 있는 법복은 신분 상징성을 최고로 잘 드러냈다. 착용 예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법복과 착용자의 권위가 동일시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색, 문양, 재료 등에 차이를 두었다.

용포는 〈표 2〉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착용사례가 가장 많은 포이다. 용포에 종립을 갖추면 용복 또는 군복의 기능을 하였고, 용포에 익선관을 쓰면 상복의 기능을 가졌다. 남자의 상복은 용포, 법복은 면복·강사포로 분명하게 구별되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적의가 상복과 법복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였다. 다만 상복으로서의 적의와 법복으로서의 적의에 세밀한 차이를 두어 용도를 구별하였다.

참고문헌

- 1) 尚方定例 天
- 2) 영조의 장남인 효장세자(진종)의 빈, 효장세자의 사후에 현빈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 3) 김용숙 (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p. 287.
- 4) 순화궁접초, 궁중발기
- 5) 經國大典 禮典
- 6) 世宗實錄 五禮 嘉禮儀式 五日朝參儀 常參儀 書筵進講儀, 大典會通禮典 儀章
- 7)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헤이로 기록하고 있으나 尚方定例에는 斜皮[돈피(綈皮)]로 기록되었음을 볼 때 의 헤는 斜의 오기로 판단된다.
- 8)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2 嘉禮
- 9) 尚方定例 人 陵幸時
- 10) 國朝續五禮儀 1卷 吉禮 陵幸時

- 11) 尚方定例, 儀軌類에는 왕실인물이 다는 보를 胸背左右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양어깨·가슴·등의 네 군데에 다는 등근 형태의 보를 가리킨다. 등근 것은 보, 네모난 것은 흥배라는 개념을 제고해야 한다.
- 12) 정(精)은 화(靴) 안에 받쳐 신는 것으로 직물로 만든 베선과 달리 텔이나 전(氈), 가죽 등으로 만들어 딱딱한 화를 신을 때 발이 편안하도록 착용한 족의(足衣)의 한 가지이다: 관경희, 흥나영 (2006). 조선시대 남자용 화(靴)에 관한 연구. 복식, 56(1), p. 49.
- 13) 유희경 외 (2003). 역사인물초상화대사전, p. 21.
- 14) 磬溪隱錄 25권 繢篇 上 衣冠制度
- 15) 日省錄 正祖 1년 5월 16일 庚
- 16) 純祖實錄 34卷 34년 4월 29일 甲子
- 17) [清] 아크敦 著, 黃有福·千和淑 校註 (1999). 奉使圖. 遼寧民族出版社.
- 18) 正祖實錄 38卷 17년 9월 25일 乙卯
- 19) 正祖實錄 32卷 15년 1월 14일 己丑
- 20) 國行乙卯整理儀軌 卷2 儀註
- 21) 黃有福 (1999). 清阿克敦《奉使圖》初探. 亞細亞文化研究, 3, pp. 10-11.
[清] 아크敦 著, 黃有福·千和淑 校註 (1999). 奉使圖. 遼寧民族出版社.
- 22) 유희경 외 (2003). 앞의 책, p. 75.
- 23) 國朝續五禮儀序例 嘉禮 龍簿
- 24) 尚方定例 人 親臨閱武時
- 25) 尚方定例 人 親覽慕華館觀武才時
- 26) 尚方定例 人 親行北漢時
- 27) 英祖實錄 96卷 36년 8월 20일 辛卯
- 28) 尚方定例 人 邀勅舉動時
- 29) 尚方定例 人 尊崇時, 進宴時
- 30) 김소현, 안인설, 장정윤 (2007). 조선시대 적의의 용례 와 제작에 대한 고찰. 복식, 57(6), 한국복식학회, pp. 97-98.
- 31) 尚方定例 地 靑衿服
- 32) 산천이나 공자를 모신 文廟 등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
- 33) 尚方定例 地 靑納金都多益粧笠
- 34) 尚方定例 人 淑儀揀擇時
- 35) 尚方定例 人 淑儀嘉禮衣服
- 36) 둉미가례사일기
- 37) 尚方定例 人 大君嘉禮衣服
- 38) 國朝五禮儀 卷4 嘉禮 王子昏儀
- 39) 尚方定例 人 夫人衣服
- 40) 尚方定例 人 公主嘉禮衣服
- 41) 尚方定例 人 儀賓衣服
- 42) 尚方定例 人 世子宮冊禮時 世子宮冠禮時 國婚
- 43) 尚方定例 地 教命
- 44) 尚方定例 天 世子宮法服
- 45) 英祖實錄 4卷 1年 3월 20일 戊午
- 46) 英祖實錄 41卷 12년 3월 15일 己酉
- 47) 英祖實錄 72卷 26년 12월 19일 戊子
- 48) 世宗實錄 五禮 嘉禮儀式 册妃儀 册王世子嬪儀
- 49) 世宗實錄 56卷 14년 5월 13일 庚午

- 50) 空頂幘에는 簪인 雙玉導가 있다.
- 51) 國朝續五禮儀補序禮 2卷 嘉禮 王世子冠禮前 幷服制度
- 52) 尚方定例 地 雙童髻, 空頂幘, 軟頭巾
- 53) 顯宗改修實錄 22卷 11年 2月 12日 庚午
- 54) 純祖實錄 22卷 19年 3月 15日 丁未, 增補文獻備考 72
卷 禮考 19
- 55) 純祖實錄 22卷 19年 3月 15日 丁未
- 56) 國朝五禮儀 3卷 嘉禮 王世子冠儀禮
- 57) 尚方定例 天 大殿法服